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11. 30 선고 2021가단12539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11. 2.

판 결 선 고 2021. 11. 3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3,702,223원 및 그 중 6,807,489원에 대하여 2021. 4. 1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감축하였다).

이 유

1.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인정사실

1) 가) (주)C[변경 전 상호 : (주)D]은 2016. 10. 26. 피고에게, ① 1,000만 원을 여신기간만료일은 여신일로부터 5년, 약정이자는 기준금리 + 연 6.92%, 지연배상금은 연 17.92%로 정하여 대여하였고, ② 990만 원을 여신기간만료일은 여신일로부터 5년, 약정이자는 연 9.05%, 지연배상금 연 20.05%로 정하여 대여하였다.

나) (주)C은 2017. 11. 28. 원고에게 (주)C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, 원고는 (주)C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7. 12. 11.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.

다) 원고가 양수한 위 각 대여금 채권은 2021. 4. 16. 기준으로 3,107,315원[=원금 합계 1,807,667원 +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 1,299,648원]이 잔존한다.

2) 가) E 주식회사는 2016. 11. 16. 피고에게 500만 원을 계약만료일은 2019. 11. 16.,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은 각 연 27.9%로 정하여 대여하였다.

나) E 주식회사는 2017. 12. 5. 원고에게 E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, 원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8. 1. 10.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.

다) 원고가 양수한 위 대여금 채권은 2021. 4. 16. 기준으로 10,594,908원(= 원금 4,999,822원 +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5,595,086원)이 잔존한다.

[인정근거] 갑 제1 내지 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채권의 총액 13,702,223원(= 위 3,107,315원 + 위 10,594,908원) 및 그 중 원금 6,807,489원(= 위 1,807,667원 + 위

4,999,822원)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21. 4. 1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지연손해금 범위 내인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김행순